

#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 SO <sub>2</sub> , NO <sub>2</sub>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 지방환경청장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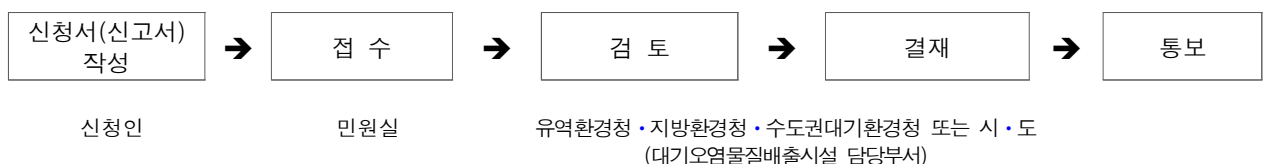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li> <li>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li> <li>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li> <li>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li> <li>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li> <li>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li> <li>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li> <li>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li> <li>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li> <li>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 · 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li> <li>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li> <li>12. 수질 및 소음 · 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 · 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li> <li>13. 수질 및 소음 · 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 · 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li> </ol>	<p>수수료 : 10,000 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p>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 처리절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	-----	-----	------	----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가동개시	가동개시 예정일			
	설치명세			

측정기기 부착완료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년	월	일	
	확인 및 통합시험 가능일(예정일)		년	월	일	
	부착 내역	굴뚝번호	측정항목	측정기 모델명	측정방법	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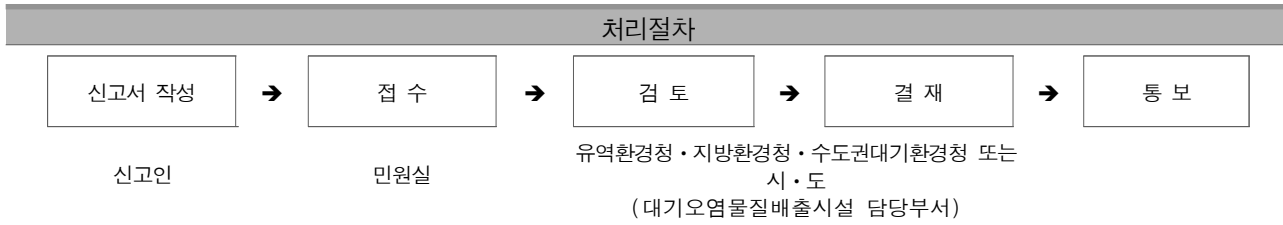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과 측정기기의 신규부착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 지방환경청장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	결 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

1.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

배출구	배출시설	가동시간	비고
1	외종		
2	외종		
3	외종		
4	외종		
5	외종		

\* 비고란은 정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2. 방지시설 운영사항

가. 방지시설 운전사항

방지 시설명	설치 위치	전력사용량 (kW/h)	처리용량 (m <sup>3</sup> /min)	처리오염 물질	처리농도 (ppm 또는 mg/Sm <sup>3</sup> )	처리효율 (%)	사용약품	
							약품명	사용량

(뒤 쪽)

나. 방지시설 보수사항

방지시설명	배출구별	보수기간	보수자	보수명세

3. 자가측정사항

측정일:							
①기상 <input type="checkbox"/> 맑음, <input type="checkbox"/> 흐림, <input type="checkbox"/> 구름, <input type="checkbox"/> 눈, <input type="checkbox"/> 비			②기온 ℃	③습도 %	④기압 mb	⑤풍향 풍	⑥풍속 m/sec
⑦배출구 번호	⑧주요배출 시설명	⑨측정 항목	⑩측정농도 (ppm, mg/Sm <sup>3</sup> )	⑪일일유량 (Sm <sup>3</sup> /일)	⑫일일배출량 (kg/일)	⑬검사 기기명	⑭검사 방법
⑮연료명 및 사용량 ( 일)							
⑯원료명 및 사용량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 포함)							
⑰환경기술인의 의견							
⑱기 타							
환경기술인 직급 :			성명 :		(인)		

※ 작성요령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에게 해당 오염물질 전부를 위탁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3호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제2호와 제3호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나목의 방지시설 보수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나 지출증빙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	------	------	------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 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 m <sup>3</sup> /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년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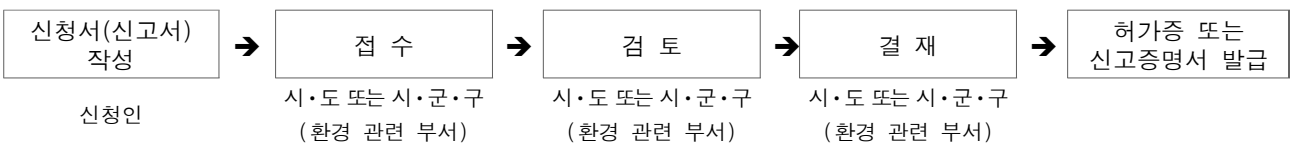
첨부서류	<p>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p> <p>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p> <p>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p> <p>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p> <p>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p> <p>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p> <p>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p> <p>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p> <p>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p>
------	---

**작성 방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	-----	------	------	------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물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	---	--

### 작성 방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종류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설치명세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결재	환경기술인	부서장	공장장	대표자

년 월 일 요일

날짜:

온도:

1. 폐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 근무자 직·성명	※ 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3.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구분	항목	전일 지침 (m³)	금일 지침 (m³)	사용량 (m³/일)	검침 시간대	구분	항목	전일 지침 (m³)	금일 지침 (m³)	배출량 및 사용량(m³/일)
계							폐수발생량			
상수도	1호						폐수배출량			
	2호									
공업용수	1호						냉각수량			
	2호									
지하수	1호						소모 (증발량)			
	2호									
하천수	1호						재사용량			
	2호									
해수 등 기타	1호						생활용수량			
	2호									

4. 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m³)	처리량(m³)	보관량(m³)	함수율(%)	보관장소

※ 함수율(%)란은 슬러지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슬러지를 적정하게 관리·처리할 수 있는 주기(월 1회 등)마다 작성합니다.

※ 슬러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장소: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소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원료 또는 첨가제 등								
사용량(kg)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공통어로 기재합니다.

6.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사용량 (kWh)	금일 폐수 1m <sup>3</sup> 당 소모전력량(kWh/m <sup>3</sup> )	검침시간	적산전력계 지침	참고사항

7. 약품사용량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량	비고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량	비고

8. 폭기조 운전상태(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pH	수온	DO	SV30	MLSS	SVI	폭기시간	주미생물상태

※ 미생물 관찰: 현미경 보유(600배율 이상), 주미생물상태는 양호 또는 불량으로 적습니다.

9.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0. 수질오염물질 측정내용

항목 구분	pH	BOD	TOC	COD	SS	n-Hex	시안(CN)	Cu				분석일
	원폐수											
방류수												

※ 사업장에서 분석하는 경우 분석자명:

※ 분석을 위탁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11.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항목별 점검내용

항목 구분	pH	BOD	TOC	COD	SS	T-N	T-P	유량계	시료채취조
청소상태									
시료도입[튜브( tubing: 배관)류] 상태									
시약류 주입상태									
센서류 작동여부									
소모품 교체									

12. 지도·점검을 받은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폐수처리방법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위탁처리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1. 17.>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연월일	결재		가동시간 ( ~ )	원료사용량				용수 사용량 (L)	폐수 발생량 (L)	폐수위탁처리			보관 폐수량 (L)	기타 중요사항
	대표자	환경기술인								위탁량 (L)	위탁·수탁 확인서 일련번호	처리 업소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 배출시설 운영 시 주의사항

## □ 변경허가(변경신고)사항(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구분	변경허가대상 (허가대상 사업자가 아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대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대기	1)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0%이상) 2)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허가 또는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b>◆변경하려는 경우(사전신고)</b> 1)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2)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4)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b>◆변경한 경우(2개월, 30일 이내 신고)</b> 1)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30일 2)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30일 3)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2개월
폐수	1)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이상(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3)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교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b>◆변경하려는 경우(사전신고)</b> 1)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2)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의 종이 변경되는 경우 3)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일부는 폐쇄하는 경우 7)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8)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b>◆변경한 경우(2개월, 30일 이내 신고)</b> 1)사업장 대표자, 명칭 변경-2개월 2)사업장 소재지 변경-30일 3)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30일 4)위탁처리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30일 5)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30일 6)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은 변경 하는 경우-30일
--	--

## □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 **환경기술인선임 및 교육이수** : 최초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 3년마다

구분	대기환경기술인	폐수환경기술인
1종	대기환경기사 1명 이상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 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자 1명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 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자 1명 이상
4·5종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자 1명 이상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자 1명 이상

- 허가사업장 중 4·5종 사업장은 3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 선임
-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하는 1,2종사업장은 3종, 3종사업장은 4,5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 선임
- 일반보일러만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 5종 환경기술인 선임 가능
-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 수질환경기술인 겸임 가능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 배출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운영일지를 기록작성 및 보관하여야함  
다만, 대기 1~3종사업장은 온라인(SEMS)을 통해 작성기록

○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배출구별로 측정)**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 3~5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매월 2회이상 자가측정
-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규모에 관계 없이 반기마다 1회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측정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 폐수위탁처리사업장 준수사항

-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발생하는 폐수의 일 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 눈금) 부착하여야함
- 위수탁 확인서를 1년간 보존해야 하며,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
-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 ○ 대기 및 폐수 측정기기 부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

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대기) 및 유량계(폐수) 등을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함

\*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도 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함

## □ 주요 위반사례

###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조업하여야 함

- 위반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 조치사항
  - 행정처분(사용중지) 및 사법처분(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00산업단지에 위치한 (주)00은 천공장비용 드릴의 재료인 합금강을 절삭하기 위해 2012년 절삭기계(5기)를 인수하고 2013년경 절삭기계3기를 신규설치하여(1일 최대 폐수량 1,870 ℓ)점검당시까지 운영중에 있음에도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함

▶ 최근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용성절삭유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검출되는 사례 발생(환경부 수질관리과 공문)  
절삭유관련 인허가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여부 확인 후 인허가서류를 제출할 것 \*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6가크롬, 셀레늄, 클로로포름 검출 가능

### ②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위반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를 위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시행규칙 제54조
- 조치사항
  - 행정처분(경고)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사례
  - 00산업단지에 위치한 0000(주)00공장의 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자가측정시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나

(법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점검당시 자가측정에 사용한 여과지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함

▶ 자가측정 대행업체는 시료채취 후 시료채취기록부와 여과지를 사업장에 보내고 확인증을 받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 ③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함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 조치사항
  - 5년 이하의 지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야 하나, 점검 현재 대기배출시설(분쇄시설) 30Hp×1기에 연결된 여과집진시설 40m<sup>3</sup>/분×1기에 대한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 측정대행업체는 사업장의 일시적인 휴업으로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사업장이 자가측정을 이행하도록 할 것

### ④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허가나 신고를 한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위반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3항
- 조치사항
  - 행정처분(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위반사례
  -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

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점검당시 처리 공정중 부상슬러지 유량조정조(1m<sup>3</sup>)를 설치 후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

▶ 폐수처리시설 도면 시설 중 용적이 1m<sup>3</sup>미만인 간이집수조라 하더라도 폐수처리계통도에 표기하고, 반송라인 등 배관을 정확하게 표기할 것

## ⑤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 조치사항
  - 행정처분(조업정지) 및 사법처분(7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점검당시('17. 3. 6) 000 생산공정의 용융,용해로 3.3m<sup>2</sup>×1기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구경(지름 15cm) 2개의 구멍을 임의로 설치('16. 8월)하여 이곳으로 공기를 유입(공기를 섞어)시켜 가동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방지시설과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27)기타시설(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되는 시설)에 해당하거나 화재·폭발예방을 위해 타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설치를 요하는 경우 근거서류 제출할 것

## 2

## 배출시설 운영 시 행정기관 보고사항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주기	보고일	제출기관
대기	대기확정배출량제출	서류제출	연2회	상반기(7월말까지) 하반기(다음해1월말까지)	관할행정기관 (산업단지 - 도 산업단지외 - 시군)
	대기배출원조사	온라인보고 (sodac.nier.go.kr)	연1회	대기1~3종(운영시마다) 대기4~5종(4년마다)	국립환경과학원
폐수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	서류제출	연1회	다음해 1월10일까지	관할행정기관 (산업단지 - 도 산업단지외 - 시군)
	전국오염원조사	온라인보고 (wems.neir.go.kr)	1회	다음해 2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

※ 대기, 수질 외 타 법령(폐기물, 화학물질 등)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확인 후 해당 제출기관에 제출

- 사업장폐기물 : 각 해당 시군구청 / 지정폐기물 : [전북지방환경청](#)
- 화학물질 : 익산, 군산(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그 외시군([전북지방환경청](#))

# 1 대기배출확정배출량 명세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5. 27.>

(제1쪽)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자	①상호(사업장 명칭)			②종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및 제82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화산화물	⑦ 배출구번호	⑧ 주요배출시설명	⑨ 사용연료명	⑩ 사용연료량(톤, kℓ/반기)	⑪ 배출계수	⑫ 황 함유량(%)	⑬ 확정배출량(kg/반기)	
	⑭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kℓ/반기)				⑮ 확정배출량 합계(kg/반기)			
먼지	⑦-1 배출구번호	⑧-1 주요배출시설명	⑨-1 사용연료명	⑩-1 사용연료량(톤, kℓ/반기)	⑪-1 배출계수	⑬-1 확정배출량(kg/반기)		
	⑭-1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kℓ/반기)				⑮-1 확정배출량 합계(kg/반기)			
질소산화물	⑦-2 배출구번호	⑧-2 주요배출시설명	⑨-2 사용연료명	⑩-2 사용연료량(톤, kℓ/반기)	⑪-2 배출계수	⑬-2 확정배출량(kg/반기)		
	⑭-2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kℓ/반기)				⑮-2 확정배출량 합계(kg/반기)			

##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및 제82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항 산 화 물	⑯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⑯-1	⑯-2	⑯-3	⑯-4	⑯-5	⑯-6	⑯-7	⑯-8	⑯-9
		배출구 번호	측정 일자	측정농도 (ppm)	일일유량 (Sm <sup>3</sup> /일)	일일배출량 (kg/일)	일일평균배출량 (kg/일)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조업일수	확정배출량 ⑯-6×⑯-8 또는 ⑯-7×⑯-8
면 지	⑰ 오염도검사 결과에 의한 확정배출량	⑰-1	⑰-2	⑰-3	⑰-4	⑰-5	⑱ 확정배출량 합계 (kg/반기)			
		배출구 번호	측정 일자	측정농도 (ppm)	일일유량 (Sm <sup>3</sup> /일)	일일배출량 (kg/일)				
면 지	⑲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⑲-1	⑲-2	⑲-3	⑲-4	⑲-5	⑲-6	⑲-7	⑲-8	⑲-9
		배출구 번호	측정 일자	측정농도 (mg/Sm <sup>3</sup> )	일일유량 (Sm <sup>3</sup> /일)	일일배출량 (kg/일)	일일평균배출량 (kg/일)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조업일수	확정배출량 ⑲-6×⑲-8 또는 ⑲-7×⑲-8
면 지	⑳ 오염도검사 결과에 의한 확정배출량	㉑-1	㉑-2	㉑-3	㉑-4	㉑-5	㉒ 확정배출량 합계 (kg/반기)			
		배출구 번호	측정 일자	측정농도 (mg/Sm <sup>3</sup> )	일일유량 (Sm <sup>3</sup> /일)	일일배출량 (kg/일)				



## ※ 작성 요령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각 란별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
2. ⑦란, ⑦-1 및 ⑦-2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3. ⑧란, ⑧-1 및 ⑧-2란은 ⑦란, ⑦-1란 및 ⑦-2란의 배출구 번호에 적힌 배출구와 관련이 있는 배출시설명을 적습니다. 다만, 배출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각각 적습니다.
4. ⑨란, ⑨-1 및 ⑨-2란은 ⑧란, ⑧-1 및 ⑧-2란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명을 적습니다(예: 석탄, 유연탄, 무연탄, BC유, BA유 등).
5. ⑩란, ⑩-1 및 ⑩-2란은 ⑦란, ⑦-1 및 ⑦-2란의 배출구에서 반기별로 사용할 연료의 양을 예측하여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등 고체연료는 톤으로, 액체연료는 kℓ 단위로 표시합니다).
6. ⑪란, ⑪-1 및 ⑪-2란은 ⑨란, ⑨-1 및 ⑨-2란의 연료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습니다(배출계수는 환경부장관이 따로 고시합니다).
7. ⑫란 및 ⑬란의 연료에 함유된 황의 양을 연료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⑬란, ⑬-1 및 ⑬-2란은 사용연료량, 배출계수, 황함유량(황함유량은 황산화물만 해당합니다)을 각각 곱하여 배출구별로 산정한 값을 적습니다.
9. ⑭란, ⑭-1 및 ⑭-2란은 ⑨란, ⑨-1 및 ⑨-2란과 ⑩란, ⑩-1 및 ⑩-2란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를 적습니다.
10. ⑮란, ⑮-1 및 ⑮-2란은 ⑬란과 ⑮-1, ⑮-2란의 각 배출구별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11. ⑯-1란, ⑯-1란 및 ⑰-1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12. ⑯-2란, ⑯-2란 및 ⑰-2란은 배출구별로 자가측정한 것을 측정일자별로 적고, 하나의 배출구에는 측정일자를 적어도 3회 이상 적어야 합니다.
13. ⑯-3란, ⑯-3란 및 ⑰-3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농도를 측정일자별로 각각 적습니다.
14. ⑯-4란, ⑯-4란 및 ⑰-4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유량을 계산해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유량은 자가측정농도 측정 시에 측정한 측정유량을 근거로 산정되며, 시간당 측정유량과 측정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의 평균치를 곱하여 적습니다.
15. ⑯-5란, ⑯-5 및 ⑰-5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배출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text{황산화물 일일배출량(⑯-5)} = \text{측정농도(⑯-3)} \times \text{일일유량(⑯-4)} \times 10^{-6} \times 64 \div 22.4$$

$$\text{먼지 일일배출량(⑯-5)} = \text{측정농도(⑯-3)} \times \text{일일유량(⑯-4)} \times 10^{-6}$$

$$\text{질소산화물 일일배출량(⑰-5)} = \text{측정농도(⑰-3)} \times \text{일일유량(⑰-4)} \times 10^{-6} \times 46 \div 22.4$$
16. ⑯-6란, ⑯-6란 및 ⑰-6란은 측정일자별로 각각 계산된 일일배출량을 배출구별로 합한 후 이를 자가측정 횟수로 나누어 해당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배출구에 3회에 걸쳐 자가측정한 황산화물의 일일배출량(⑯-5)이 각각 30kg, 27kg, 33kg이라면 황산화물의 일일평균배출량은  $(30+27+33) \div 3 = 30\text{kg}$ 이 됩니다.
17. ⑯-7란, ⑯-7란 및 ⑰-7란은 ⑰란 또는 ⑱란 및 ㉓란에 적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⑯-1란 또는 ⑯-1란 및 ⑰-1란의 배출구번호와 ⑰-1란 또는 ⑱-1란 및 ㉓-1란의 배출구번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그 산정방식은 ⑯-6란, ⑯-6란 및 ⑰-6란의 일일평균배출량과 ⑰-5란, ⑱-5란 및 ㉓-5란의 일일배출량을 더한 후 이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1번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이 30kg인데 ⑰-5의 검사결과에 의한 1번 배출구의 일일배출량이 40kg인 경우에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30+40) \div 2 = 35\text{kg}$ 이 됩니다.  
 - 만약, 1번 배출구의 ⑰-5의 검사결과에 의한 일일배출량이 각각 40kg과 50kg으로 2번이 있다면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30+40+50) \div 3 = 40\text{kg}$ 이 됩니다.
18. ⑯-8란, ⑯-8란 및 ⑰-8란은 해당 배출구별로 조업일수를 적습니다.
19. ⑯-9란, ⑯-9란 및 ⑰-9란은 각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⑯-7란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⑯-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⑯-7) × 조업일수(⑯-8)  
 나. ⑯-7란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⑯-9) = 일일평균배출량(⑯-6) × 조업일수(⑯-8)  
 다. ⑯-7란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⑯-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⑯-7) × 조업일수(⑯-8)  
 라. ⑯-7란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⑯-9) = 일일평균배출량(⑯-6) × 조업일수(⑯-8)  
 마. ⑰-7란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⑰-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⑰-7) × 조업일수(⑰-8)  
 바. ⑰-7란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⑰-9) = 일일평균배출량(⑰-6) × 조업일수(⑰-8)
20. ⑱란, ㉑란 및 ㉒란은 각 배출구별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 합계를 적습니다.